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등〉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22호)

■ 박 정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1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9
1. 제정안의 개관	9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14
가. 현황	14
나. 현행 법체계의 한계	16
다. 종합적 검토	17
3. 조문별 검토	22
가.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계·정보관리체계	29
다. 전담기관·지역지원센터의 지정	36

라. 기후가치평가 지원	42
마. 혁신기업 발굴 지원	49
바. 혁신기업 성장 지원(투자조합·금융·세제지원 등)	57
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66
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옴부즈만	73
자.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및 일괄처리	82
차.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집적단지 조성	101
카. 보칙 및 부칙	109
※ 참고자료	113

I. 제안경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122)】**

1.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06. 08.
3. 회 부 일 : 2026. 07. 01.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611)】**

1. 제 안 자 : 박 정의원 등 36인
2. 제 안 일 : 2026. 06. 29.
3. 회 부 일 : 2026. 07.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12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은 에너지·산업·도시·농식품·순환경제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험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비즈니스의 집합으로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테크는 연구개발의 성공만으로 시장 확산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영역이 아님. 기후테크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감축가능성과 효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실증·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투자·금융·조달 등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결이 함께 작동해야 함.

다시 말해, 기후테크는 기술개발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건너게 할 것인가가 해당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감축목표와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기술개발 촉진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산업의 일반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들 법률은 각기 고유한 정책 목적에 따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기후테크가 시장에서 사업화되고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 요구되는 정량 성과의 검증, 성과 기반 사업화 지원, 투자·금융 연계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그리고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결합하는 종합적·연쇄적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이에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하고자 함.

이로써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 및 순환경제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기후테크 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후성과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기업의 제품·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실현가능성·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 아울러, 기후테크 전략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함. 또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수요창출 시책을 규정하여 기술개발 단계에서 시장 확산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기술·인력·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행사 개최, 현지 진출 자문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함. 또한 복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611)】

제안이유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선 기후테크 산업화와 이의 확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함. 또한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테크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기후테크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성과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의 제품·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테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실현가능성·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 아울러, 기후테크 전략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함. 또한 연구개발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시책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를 통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기술·인력·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행사 개최, 현지 진출 자문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함. 또한 복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기후테크¹⁾’를 독립된 산업 정책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 특례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기후테크기업이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적응 기여도를 ‘기후성과’로,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기후가치평가’로 규정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연구개발(R&D) 중심에 머물렀던 기후기술 정책을 산업 육성과 시장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취지임.

발의된 두 제정안은 모두 총 5장(총칙, 추진체계, 혁신기업 발굴·육성, 규제특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주영의원안의 경우 총 37개 조문과 보칙 3개 조문, 박정의원안의 경우 총 35개 조문과 보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됨.

1)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함

[제 정 안 조 문 구 성 비 교]

장	내용	2219122 (김주영의원안)	2219611 (박정의의원안)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의	제2조(정의) ※ 기후성과·기후가치평가	제2조(정의) ★ 기후테크기업 별도 정의 기후테크성과·기후테크가치평가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기본계획	제5조(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즉시 변경 조항 있음
	통계 조사·작성	제6조(통계의 조사·작성) ※ 임의 규정	제6조(통계의 조사·작성) ★ 의무 규정 + 자료제출 의무
	전담기관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지정·취소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설립 또는 지정 (취소 없음)
	지역 지원센터	제8조(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8조(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후 가치평가	제9조(기후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 의무 없음	제9조(기후테크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 매년 시행 의무
제3장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 제1절 혁신기업 발굴 지원			
제3장 제1절	창업 활성화	제10조(창업의 활성화)	제10조(창업의 활성화)
	사업화 지원	제11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제11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 환수 조항 통합(제5항)
	지원금 환수	제12조(지원금의 환수) ※ 의무적 환수	없음 (제11조제5항에 통합)
	전략사업	제13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제12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정보공개	제14조(정보의 공개)	제13조(정보의 공개)
제3장 / 제2절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3장	전문투자	제15조(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14조(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장	내용	2219122 (김주영의원안)	2219611 (박정의의원안)
제2절	조합	※ 이원 등록(중기부/기후부)	★ 기후부 일원화
	금융 지원	제16조(금융 지원) ※ 신보·기보·지역신보	제15조(금융 지원) ★ 신보·기보만 포함
	연구개발 지원	제17조(연구개발 지원 등)	제16조(연구개발 지원 등)
	세제 지원	제18조(세제 지원)	제17조(세제 지원)
	초기 수요창출	제19조(초기 수요창출)	없음
	기금 지원	제20조(기금 등을 통한 지원) ※ 7개 기금	제18조(기금 등을 통한 지원) ★ 3개 기금
제3장 / 제3절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제3장 제3절	전문인력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특성화 교육기관	제22조(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 대학·대학원 + 이공계특목대	제20조(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 관 등의 지정) ★ 교육기관 포괄 개념
	국제협력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 출 지원)
제4장 규제특례	위원회	제24조(기후테크 규제특례심 의위원회)	제22조(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 원회)
	옴부즈만	제25조(기후테크 옴부즈만)	없음
	규제 신속확인	제26조(규제의 신속확인) ※ 총 90일 간주 없음	제23조(규제의 신속확인) ★ 총 60일 + 간주처리
	실증특례	제27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간소화 없음 2년	제2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7일 간소화 2년
	실증특례 관리·감독	제28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제25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실증특례 취소	제29조(실증특례의 취소) ※ 3가지 사유	제26조(실증특례의 취소) ★ 5가지 사유
	실증특례	제30조(실증특례의 연장 등)	제27조(실증특례의 연장 등)

장	내용	2219122 (김주영의원안)	2219611 (박정의의원안)
	연장		★ 법령정비 단계 상세 규정
	임시허가	제31조(임시허가) ※ 2년 이하	제28조(임시허가) ※ 2년 이하
	임시허가 취소	제32조(임시허가의 취소)	제29조(임시허가의 취소)
	일괄처리	제33조(일괄처리)	제30조(일괄처리)
	실증기반 개방·활 용	제34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제31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집적단지 조성	없음	제32조(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제5장 보칙	자료 제출 및 검사	제3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청문	없음	없음
	권한 위임·위 탁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벌칙	없음	없음
부칙	시행일	제1조(시행일) 공포 후 1년	제1조(시행일) 공포 후 1년
	준비행위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전담기관지원센터 포함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전담기관지원센터 제외
	경과조치	제3조(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 치)	제3조(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 치)
합계	총 조문 수	37조 + 부칙 3조	35조 + 부칙 3조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기후(테크) 가치평가를 통한 성과 기반의 지원, 기후테크 전략사업 지정 등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혁신기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기금의 종류, ‘기후테크 옴부즈만’ 규정 유무,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등 일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음.

[두 제정안의 주요 차이 비교]

구분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정의	기후성과·기후가치평가	기후테크성과·기후테크가치평가
정의 체계	기후테크혁신기업 통합 정의	기후테크기업·혁신기업 분리 정의
기본계획 변경	위원회 심의 필요	즉시 변경 가능
통계 조사 의무	임의 규정	의무 규정 + 자료제출 의무
전담기관	지정·취소	설립 또는 지정 (취소 없음)
가치평가 시행 의무	없음	매년 시행 의무
초기 수요창출	있음 (제19조)	없음
기금 범위	7개 기금	3개 기금
옴부즈만	있음 (제25조)	없음
신속확인 기간	90일, 간주처리 없음	60일, 간주처리 있음
유사사례 간소화	없음	있음 (7일)
집적단지 조성	없음	있음 (제32조)
부칙 준비행위	전담기관·지원센터 포함	전담기관·지원센터 제외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가. 현황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후테크는 녹색전환(GX) 및 탄소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였음.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 및 유관산업을 총칭함(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참고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제시한 기후테크는 클린테크·카본테크·에코테크·푸드테크·지오테크의 5대 분야이고, 분야별 개념 및 상세 기술 예시는 다음과 같음.

[기후테크 5대 분야별 개념 및 상세 기술 예시]

분야	개념	세부내용
클린테크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 재생에너지 생산, 분산형 에너지 공장, 에너지 DX, ESS 등
카본테크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감축	○ 직접포집(DAC), CCUS, 탄소저감 연·원료 대체 등
에코테크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 업사이클링, 폐자원원료화, 폐기물 관리시스템, 친환경 소재 제품 등
푸드테크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	○ 대체식품, 친환경 포장, 식품 부산물 활용, 친환경 농업 등
지오테크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 탄소관측, 배출권거래, 기후감시·예측, 기후위기 적응시스템 등

이와 같은 기후테크산업은 글로벌 환경규제 발효에 따른 대응 방안 및 GX 실현의 구체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여 친환경 기술 R&D 투자, 10대 기후혁신기술 투자지원 등 기후혁신기술 선정과 투자지원 중심의 정책을 법제화하였고, 일본은 2023년 「GX추진법」을 제정하여 환경혁신기술 R&D 지원 등 수소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하였음.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있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23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참고 1] 참조)을 수립하여 ① 기후기술 정책펀드 조성, ② 기후기술 R&D 확대, ③ 기후기술 금융지원 활성화, ④ 기후기술 판로개척을 중심으로 기후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신성장 동력화하는 방향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였음.

이러한 국가적 추진 전략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사업화·투자 연계·규제 특례·시장 진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전략과 실행 사이의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임.

나. 현행 법체계의 한계

현행 법체계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음.

첫째, 기후테크 산업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부재함.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감축목표·정책방향·기후대응기금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산업화 지원 기능이 다소 부족한 특징이 있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은 R&D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후성과 검증-사업화 지원-투자·금융 연계-규제특례-초기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산업화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둘째, 기후테크에 특화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담 제도가 부재함.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ICT·산업융합·순환경제 등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6년 7월 기준 전체 규제 샌드박스 2,584건 중 순환경제 분야는 35건(1.4%)에 불과하고, 기후테크 전 분야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이 없음.

셋째, 기후성과(온실가스 감축·기후적응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지원·금융·투자 연계하는 표준 평가 제도가 부재함.

현재 유사 제도인 녹색인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배출권거래제 등은 녹색성 여부 및 금융 투자 연계 가능성 판단을 위한 평가제도에

중점을 두며, 기후테크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화폐 가치·등급으로 산정하는 성과 기반 지원체계는 아직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민간 금융의 기후테크 투자 유인이 미흡한 상황임.

다. 종합적 검토

본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인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이에 제정안은 기후테크와 그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성과 평가와 연계한 금융·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다부처에 걸친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

또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함.

제정안을 통해 현행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시장 창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법제가 마련되어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존 기후·환경 관련 법률과 목적, 지원 대상, 수단 측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각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후·환경 관련 법률은 「탄소중립기본법」, 「기후기술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각 법안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안 현황]

	탄소중립 기본법	기후기술법	환경기술 산업법	기후테크 산업육성법(안)
소관 부처	기후부/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과기정통부	기후부	기후부
주요 목적	국가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컨트롤타워	기후위기 대응 원천기술 R&D 기반 확보	환경기술 상용화 및 금융지원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 및 투자 생태계 조성
핵심 내용	NDC수립 및 이행 점검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구 협력 체계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환경산업체 육성	기후가치평가 및 전략사업 (기후테크+전후방 패키지)
핵심 기능	법정부 정책 통합 및 기금 운용	기술 수준 조사 및 산학연 R&D 촉진	기술의 사업화 및 금융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전후방 산업 연계
주요 지원책	기후대응기금 지원	연구비 지원 및 기술이전 인센티브	환경산업 육성 자금 및 융자지원	패키지 지원 및 규제 샌드 박스 적용

	탄소중립 기본법	기후기술법	환경기술 산업법	기후테크 산업육성법(안)
대상	전국가적 (공공+민간)	출연연, 대학, 기업 부설 연구소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 벤처
차별점	최상위 기본법	R&D 단계의 기술 확보 집중	기술의 상용화 및 금융지원 강화	기후가치평가 민간 투자 중심
글로벌 연계	파리협정 및 NDC 이행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글로벌 기술 인증 상호인정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선점
주요 지표	온실가스 감축 달성율	세계 대비 기술 수준(%)	환경기술 사업화 성공률	민간 투자 유치액
법적 성격	최상위 기본법	기술 지원법	사업화, 금융지원법	신산업 혁신 창업 진흥 특별법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히, 「기후기술법」은 기후기술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체계를 고려하여 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후기술법」 상 기후기술에 대한 주요 규정 사항]

조항	내용
정의 (제2조)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본계획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조항	내용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술개발 활동조사 (제7조)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근거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 성별·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 분야별·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의무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교육·훈련 프로그램, 해외 연수 및 해외 우수 인력 유치·활용 등 시책 마련 의무
전담기관의 지정 (제15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 -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 -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 제12조에 따른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지원

둘째,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 및 「기후기술법」상 ‘기후기술’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상 상위 범위인 ‘녹색기술’ 및 「기후기술법」상 R&D 중심의 ‘기후기술’과 개념적 중복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법상 정의 규정을 고려하여 ‘기후테크’의 정의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고 있는 ‘기후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핵심 절차나 평가 기준, 활용 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후가치평가는 기업의 금융지원 및 규제 특례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써,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기후가치평가의 대상(감축량, 적응 기여도, 기술 혁신성 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분야(금융지원, 조달 우대, 투자 연계 등)의 핵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²⁾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다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가치평가의 세부 절차 기준 산정방법은 현재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향후 별도연구와 시범적용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법률에는 기후가치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 평가 기관 지정, 평가결과 활용 근거 등 기본사항을 두고, 구체적인 지표·산식·검증방법·활용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혁신기업 발굴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기후테크·기후테크 산업·혁신기업·기후성과·기후가치평가 등을 정의하며(제2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및 다른 법률 우선 적용(제4조)을 규정함.

[제정안 제1조 ~ 제4조]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와 탈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테크 육성과 기후테크기업 지원 및 혁신기업 발굴을 통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와 탈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및 이상기후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의 순환경제기술 다.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기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기후테크 산업”이란 기후테크를 활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의 순환경제기술 다. 그 밖에 기후위기 등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후테크혁신기업”이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기후테크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혁신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

4. “기후성과”란 기후테크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기후테크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후 적응에 대한 기여도 및 이와 관련된 잠재적 효과를 말한다.

5. “기후가치평가”란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를 평가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말한다.

6. “기후테크 전략사업”이란 기후테크의 공급망 안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기술

2. “기후테크 산업”이란 기술개발 및 기후테크 활용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후테크 전략사업”이란 기후테크 공급망 안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기후테크기업”이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기후테크 혁신기업”이란 기후테크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혁신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

6. “기후테크성과”란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도 및 이와 관련된 잠재적 효과를 말한다.

7. “기후테크가치평가”란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기후테크성과를 평가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후테크기업, 혁신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혁신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테크기업 지원,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기업, 혁신기업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기업 지원, 혁신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

두 제정안은 동일하게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정의 규정 대상은 두 제정안이 대체로 유사하나, 용어 명칭에서 김주영의원안은 ‘기후성과’·‘기후가치평가’, 박정의원안은 ‘기후테크성과’·‘기후테크가치평가’로 용어의 일부를 다르게 정의함.

또한, 김주영의원안은 ‘기후테크혁신기업’(제3호)을 ‘기후테크기업’의

하위개념으로 통합하여 정의하는 반면 박정의원안은 ‘기후테크기업’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함.

그 외 차이점으로는, 기후테크의 정의와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기술’, 박정의원안은 ‘기후위기 등에 관한 기술’로 구체적인 기술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정안 정의 규정 비교]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1호	기후테크	
제2호	기후테크산업	
제3호	기후테크혁신기업	기후테크 전략사업
제4호	기후성과	기후테크기업
제5호	기후가치평가	기후테크 혁신기업
제6호	기후테크 전략사업	기후테크성과
제7호	-	기후테크가치평가

동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후테크’와 ‘녹색기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녹색기술³⁾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정의 조항으로, 동 제정안

의 ‘기후테크’ 정의와 유사하게 ① 「기후기술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순환경제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기후테크 및 녹색기술 정의 비교]

제정안 ‘기후테크’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4)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5)의 순환경제기술	2.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3.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기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3. 청정생산기술
-	4. 신·재생에너지 기술
-	5.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 ⁶⁾) 및 친환경 기술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권리와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

두 정의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나 동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기보다 ‘녹색기술’의 하위 항목으로 ‘기후테크’를 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예컨대 ‘녹색기술’은 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포괄적 개념인 반면, ‘기후테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적 활용에 특화된 하위·특화 개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기후테크’ 정의를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중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등으로 규정할 경우, 동 제정안에서 ‘기후테크’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기존 ‘녹색기술’과의 중복 또는 별도 규정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둘째, ‘기후테크 전략사업’ 정의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김주영의원안 제2조제6호 및 박정의의원안 제2조제3호는 ‘기후테크 전략사업’을 ‘기후테크의 공급망 안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하여 제13조7)(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정안에서 ‘기후테크 전략사업’이 사용되는 조항은 제13조

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7) 제13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의 기술 선점을 위하여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12조)의 한 조항인데, ① 정의하려는 용어가 법률의 전반에 걸쳐 여러 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② 해당 조항은 실체적인 규정과 결합하여 살펴보아야만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관련 실체규정에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의 규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⁸⁾

또한, 인용 대상 조항인 제13조(제12조)에서 ‘기후테크 전략사업’을 또다시 ‘전략사업’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동 정의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법제기준과 실제(2024)」 247p-249p, 국회 법제실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계·정보관리체계

제정안은 정부가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테크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도록 규정함(제6조).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2장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혁신기업의 창업, 실증·사업화 지원 및 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 6. 기후테크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이후에도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후테크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혁신기업의 창업, 실증·사업화 지원 및 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조사·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생태계의 구성과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기후테크에 관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후테크기업 및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의 조사·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후테크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조사·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생태계의 구성과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기후테크에 관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후테크기업 및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의 조사·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현황과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김주영의원안은 기본계획 변경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계 조사·작성을 재량 규정으로 두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 시 제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박정의원안은 기본계획 변경시 별도 심의 규정을 두지 않고, 통계·조사 작성을 의무 규정으로 두며,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김주영의원안 및 박정의원안 비교]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기본계획 변경시 심의 규정	○	X
통계 조사·작성	재량	의무
자료제출 의무	-	의무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⁹⁾(5년 단위, 20년 계획기간의 최상위 계획), 「기후기술법」상 기후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¹⁰⁾(5년 단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및 수립 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타법상 기본계획 비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안)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기후기술법	기후테크산업육성법(안)
수립 주기	5년	5년	5년
계획 기간	20년	10년	-
주체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현황	제1차 기본계획 (’23~’42)	제1차 기본계획 (’23~’32)	-

동 제정안에 따른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5년 단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립)이 신설될 경우, 현존하는 기본계획과의 조화 및 모순·충돌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간 관계를 조율해야 할 것임.

-
1. ~ 6. (생략)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 11. (생략)
 - 1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6.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9.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둘째, 기본계획 변경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심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박정의원안은 심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은 정책적 신중함과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심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심의 절차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책적 심의의 필요성과 행정적 신속성·효율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후테크 현황 및 통계자료 수집·작성 관리에 대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재량 규정, 박정의원안은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음.

재량으로 규정할 경우 예산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으나, 산업 초기 데이터 축적이 부실해질 우려도 있으므로, 적절한 통계 수집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상대 기관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박정의원안은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고,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할 경우 성실한 자료 제출을 유도하여 통계 작성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

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통계·조사에 대한 정부 의무 규정 방식 및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통계·조사 의무 규정 방식 및 자료 제출 의무 관련 입법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조류·해류·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전담기관·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전담기관이 현황조사·정보관리·R&D 지원·규제특례 지원·사업화 지원금 심사·가치평가 개발·운용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제8조).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기업 육성 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후테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기후테크 현황조사 2. 기후테크기업 관련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 기후테크기업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관련한 지원 5. 초기 사업화 지원금 심사 지원 등 혁신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 측정·관리를 위한 기후가치평가의 개발 및 운용 7. 기후테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업	제7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및 혁신기업 육성 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후테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기후테크 관련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조사 2.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 관련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 기후테크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지원 5.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후테크기업의 기후테크성과 측정·관리를 위한 기후테크가치평가의 개발 및 운용 7. 기후테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업

8. 기후테크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그 밖에 기후테크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기후테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기후테크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그 밖에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테크기업 지원,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기후테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기후테크 관련 현황 조사 2.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이행점검 및 분석 지원 3. 기후테크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지원 4. 지역 내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 5. 제26조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33조에 따른 일괄처리의 신청과 사후관리 지원 6. 지역의 혁신기업 육성 관련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기후테크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기후테크 관련 현황 조사 2.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이행점검 및 분석 지원 3. 기후테크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지원 4. 지역 내 기후테크기업의 기후테크 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 5. 제23조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24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30조에 따른 일괄처리의 신청과 사후관리 지원 6. 지역의 혁신기업 육성 관련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두 제정안은 동일하게 전담기관 지정 근거 및 전담기관의 업무 내용,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기후테크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업 발굴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다만, 김주영의원안은 추가로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두고 있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정의원안과 달리 김주영의원안은 전담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전담기관의 지정 뿐만 아니라 취소에 관하여도 법률에서 대략의 기준과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기관의 입장에서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기후기술법」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되, 별도로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유사입법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2.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
4.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5. 제12조에 따른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

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2조¹¹⁾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 절차 규정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기후테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의 기후테크 업무가 지역 테크노파크(인천, 제주, 경기 등)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기후테크센터 운영·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

참고로,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기후테크센터로 지정하여 연간 8개 사업을 12억 6,000만원 규모로 운영 중임.

11)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 ⑥ (생략)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사례]

설립일	2026년 2월 12일
설립근거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운영형태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을 기후테크센터로 지정하고, 기후테크 지원사업 및 운영비 등을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며 진흥원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팀을 신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 산하 공기관으로 매년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도에서 진흥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후테크팀 사무에 따른 인건비 또한 진흥원 내에서 출연금을 활용해 지급
전담인력	8명
주요업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후테크 정책지원 등
26년 사업 예산	8개 사업 /12억 6천만원 기후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통계조사, 유망기후테크지원사업, 기후분야 청년일자리 교육사업,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얼라이언스 운영, 센터 운영 등

자료 : 기후에너지 환경부

라. 기후가치평가 지원

제정안은 기후가치평가 제도의 개발·운영 지원 및 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9조).

[제정안 제9조]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의원안
제9조(기후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기후테크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기후성과의 산정을 위한 기후가치평가 제도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테크기업은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기후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테크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기후테크성과의 산정을 위한 기후테크가치평가 제도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매년 기후테크가치평가를 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은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기후테크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⑤ 평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신청,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시행, 평가의 신청,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기후 적응 기여도 등 기후성적을 산정·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의 개발·운영 및 평가기관 지정·관리 근거를 신설함.

이는 기존의 재무적 가치 중심 평가나 과거 실적 기반의 MRV¹²⁾(측정·보고·검증) 체계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과 혁신 기술의 기후 기여도를 화폐가치·등급으로 정량화하여 정책금융·공공구매 등과 연계하려는 취지임.

현행 MRV 체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의 핵심 체계

(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주로 제조기업 및 감축 사업장의 과거 발생 실적(‘기존 배출량-기술 적용 후 배출량’)을 검·인증하는 방식임.

이러한 기존 MRV 체계는 시설·시스템 단위의 과거 감축 성과 측정 위주임에 따라, 혁신적인 요소기술 및 제품을 개발·보급하는 중소·벤처 기후테크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기후가치평가’는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기후 적응 기여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금융지원과 투자, 자금조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지원·금융조달·투자심사와 연계하는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기후가치평가 및 MRV 비교]

	기후가치평가	MRV
주체	기후테크기업	제조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업)
평가/ 관리대상	기후기술 솔루션 (ex. AI 드론 풍력 O&M 기술)	사업장 (ex. 풍력발전단지)
단위	요소기술·제품	시설/시스템
내용	미래 가치(성장성) 평가	과거 실적 검·인증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4년 에너지·기후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기후가치평가 및 기후솔루션 확산 컨설팅을 제공하는 ‘에너지·기후테크 기후대응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¹³⁾을 추진한 바 있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 제9조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그 위임이 다소 포괄적임.

동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혹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정 기준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박정의원안은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제출된 결과의 검증을 위한 것으로, 결과 검증을 위해 필요한 행정력과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고려하여 제출 주기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

13) - 예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예특)(R&D)(5804-316)
- 사업형태 : 연구용역('23.12.05~24.12.04.)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제출된 결과의 사후관리 공개 체계가 부재함.

부실 평가를 방지하고 민간 투자시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가치평가 결과를 공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시장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조항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법」의 유사입법례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기관 지정 및 검증 유사입법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삭제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⑦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기후가치평가 개요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배경)** 기후테크 기업은 기업 자체의 감축활동 보다 혁신기술의 보급을 통해 우수한 감축 효과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평가방법 및 Tool이 부재하여 저평가 되는 경향
 - 그간 기존 온실가스 감축시장은 외부사업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감축사업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어 개별 요소 기술 기반의 “중소·중견·벤처기업”인 기후테크 기업 참여가 제한적
 - 기후테크 기업은 신기술 중심 산업으로, 기존 평가체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
- **(필요성)** 기후테크 기업 특성을 반영한 보다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탄소·금융시장 진입지원

<기후테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특징>

방 법	주 체	평가/관리대상	단 위	내 용
기후가치평가	기후테크기업	기후기술 솔루션 (ex. AI 드론 풍력 O&M 기술)	요소기술·제품	미래 가치·성장성 평가
MRV*	제조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업)	사업장 (ex. 풍력발전단지)	시설/시스템	과거 실적 검증

* MRV는 Measurement 측정, Reporting 보고, Verification 검증의 약자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과정을 뜻함

- 기존 평가체계*와 달리 기후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화폐적 가치·등급으로 환산하여 평가

* 기존 평가제도인 기술가치평가(재무적 가치), MRV(과거 실적 측정·검증)와 상이

- **(기대효과)** 기후테크(기후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고 화폐적 가치 등급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여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기후 금융 투자 효과성 검토에 활용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마. 혁신기업 발굴 지원

제정안은 창업 활성화 사업(제10조), 이행계획 심사를 거친 초기 사업화 지원금 지급(제11조), 부정수급 등 경우 환수 근거(김주영의원안 제12조), 핵심기술기업과 전후방 공급망 연계기업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묶는 전략사업 지정 및 R&D 실증·금융·보증·책임보험 통합 지원(김주영의원안 제13조·박정의의원안 제12조), 정보공개 의무(김주영의원안 제14조·박정의의원안 제13조)를 규정함.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4조(제13조)까지]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의원안
제3장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제1절 혁신기업 발굴 지원 제10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기후테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4.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① 기	제3장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제1절 혁신기업 발굴 지원 제10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기후테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4.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혁신기업은 사업화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는 혁신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혁신기업은 사업화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는 혁신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의 기술 선점을 위하여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육성 할 수 있다.

② 전략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해당 기술의 구현·확산에 필수적인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구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략사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전략사업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증 및 운영실적(Track Record) 확보 지원
3. 신기술 도입 및 공정 전환에 따르는 사업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보증 지원
4.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기반의 조성

제12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의 기술 선점을 위하여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전략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해당 기술의 구현·확산에 필수적인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구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략사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전략사업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증 및 운영실적(Track Record) 확보 지원
3. 신기술 도입 및 공정 전환에 따르는 사업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보증 지원
4.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기반의 조성

5.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용 책임보험 가입 및 컨설팅 지원 등 6. 제27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등 혁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략사업의 지정 기준,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실적 2.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실적과 환수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절차와 비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용 책임보험 가입 및 컨설팅 지원 등 6. 제24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등 혁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략사업의 지정 기준,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실적 2.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실적과 환수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절차와 비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기후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두 제정안은 ‘창업 활성화 - 사업화 지원 - 지원금 환수 - 전략사업 패키지 지원 - 정보공개’로 이어지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지원금 환수 규정 체계의 경우 김주영의원안은 별도 독립 조항(제12조)으로 분리한 반면, 박정의원안은 제11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제5

항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11조 기술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와의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조항은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초기 창업패키지¹⁴⁾’,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¹⁵⁾’ 등 기존 사업들과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 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유사·중복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을 금지하거나 사전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법률에서 중복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 등 문구를 명시하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14) 유망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평균 7천만 원~최대 1억 원)과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

15)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추천받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 및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기술인력 창업활성화 도모

[중복 지원 방지 유사입법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생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8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할 때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둘째,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전략사업 지원 대상 공급망 기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핵심기술 기업과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R&D·실증·금융·보증·책임보험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전략사업’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때 제정안은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해당 기술의 구현·확산에 필수적인 기업’으로 정의하여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기업’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기후테크 전략사업 개요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배경)** 현 지원 체계는 핵심 기술을 가진 **개별 기업**에만 집중되어 이를 실제 공정에 도입해야 할 **전·후방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이 없음**

* 협력사(수요처)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 시 기존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 공정전환 비용과 그에 따른 수율 저하 리스크 등의 전환비용을 독자적으로 감당 부담

○ 기후테크 신기술은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규제준수, 전환비용)**가 존재하며 공급망 동반 진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혁신적인 기후테크 창업기업**이라도, **공급망 파트너**를 찾지 못한 기술은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됨(Death Valley)

□ **(주요내용)** 기후테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혁신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육성의 근거 조항 마련

○ **(개념)** 핵심기술 기업과 **전·후방 파트너사**를 하나의 지원 단위로 묶어 시장에 동시 진입시키는 **생태계 중심 모델**

* **파트너 기업**이 자기 공장을 기후테크 신기술에 맞게 공정 전환하는데 따른 **전환비용** 등 투자 불확실성을 **금융·보증, 책임보험** 등 지원

	후 방	핵심기업	전 방
역할	원재료 공급 및 핵심 부품 제조	제품 설계 및 완성	완성품 조립 및 서비스 제공
핵심	기술의 근간(소재)	기술 구현(공정)	시장 요구(수요)
기업	리튬 등 광물	배터리 셀 제조사	전기차/ESS

□ **(기대효과)** 혁신기술을 가진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대신 전·후방 파트너사와 **원팀**으로 지정되어 **초기 시장 진입 장벽 완화**

○ 신기술 도입을 주저하던 전후방 협력사들에게 **금융·보증**이라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반 진입 유도하여 **민간투자 유입** 선순환 구축

바. 혁신기업 성장 지원(투자조합·금융·세제지원 등)

제정안은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록 및 금융지원(김주영의원안 제15조·제16조, 박정의원안 제14조·제15조),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및 조세 감면(김주영의원안 제17조·제18조, 박정의원안 제16조·제17조),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기금·특별회계 활용(김주영의원안 제20조, 박정의원안 제18조) 근거를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김주영의원안의 경우 상용화 초기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조항(제19조)을 규정함.

[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2절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2절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15조(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혁신기업을 수요하는 기업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업개요
2. 조합원의 구성 및 출자계획
3. 투자대상 혁신기업의 선정기준 및 투자계획
4. 수익의 배분계획
5.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상법」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혁신기업을 수요하는 기업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업개요
2. 조합원의 구성 및 출자계획
3. 투자대상 혁신기업의 선정기준 및 투자계획
4. 수익의 배분계획
5.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상법」

중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금융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혁신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중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금융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혁신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후테크 산업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초기 수요창출) ① 정부는 혁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기업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기금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 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	---

제정안은 기후테크 산업의 초기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투자·금융, R&D, 세제, 초기 시장 창출, 재정 지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두 제정안은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우대 조항을 명시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기후테크 R&D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조세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관련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근거를 함께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두 제정안 간 차이점으로 김주영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통한 초기 수요 창출 조항(제19조)을 별도로 두어 상용화 초기 제품의 판로를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① 전문투자조합 등록 관할(이원화, 기후부 일원화) ②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 신보·기보), ③ 초기 수요창출 (규정 유무), ④ 기금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15조(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와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외의 기관이 결성하는 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관할을 이원화한 반면, 박정의원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기부의 감독·검사 체계 및 벤처투자 생태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동 조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기능에 대한 감독체계·

주체가 개별법, 각 사업 부처로 분산되는 경우 동일 기능에 대한 규제 차이 발생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통합금융감독체계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으로서 동 조항이 필요하며, 타법 사례에서 전문투자조합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5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문투자조합 유사입법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

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김주영의원안은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여 혁신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해당 제품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됨.

참고로, 동 조항과 유사하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수요창출을 위한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초기 수요 창출 유사입법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8조(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기금 및 특별회계 활용 범위와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기후 대응기금, 전력기금 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부장특별회계 등 7개 기금·회계를 명시한 반면, 박정의원안은 기후대응기금, 전력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로 규정함.

다양한 기금의 활용은 자금 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기금의 목적 및 상황을 고려하여 활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제정안은 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 인력양성사업 추진 근거(김주영 의원안 제21조·박정의원안 제19조),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지정 취소 근거(김주영의원안 제22조·박정의원안 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근거(김주영의원안 제23조·박정의원안 제21조)를 규정함.

[제정안 제21조(제19조)부터 제23조(제21조)까지]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3절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테크 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업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제3절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테크 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업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테크 관련 학과를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기후테크산업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22조에 따른 특성화대학, 특성화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기후테크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제22조(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특성화 대학원(이하 “특성화 대학 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

력양성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기후테크산업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 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산과과학기술원

**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특성화 대학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후테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석
4. 기후테크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5. 기후테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자문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특성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후테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석
4.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5.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자문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두 제정안은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지원 - 해외진출 및 실증 지원’ 으로 이어지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김주영의원안은 특성화 대학의 지정 대상(「고등교육법」상 대학, 4대 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지원 항목에 ‘대학 학생 정원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킨 반면, 박정의원안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존 타 부처 인력양성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산림청 등 부처에서 대학 및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구분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사업 내용	• (목적)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및 기반연구 확대 • (지원유형) 석·박사학위 협동과정 • (교육대상) 석/박사 과정 (연평균 32명)	• (목적) 환경전문가로 양성해 국제기구에 파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 • (지원유형) 비학위과정 • (교육대상) 학부생 이상,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1년 이내인 자 (연간 40명)	• (목적)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지원유형) 석·박사학위과정, R&D지원 • (교육대상) 석/박사 과정 ('22~'24년) 7,651명

구분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 (지원내용) 인건비/연구활동비,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산학연계활동 • (교육내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대학 별로 특화됨. 기후변화 적응형 그린 인프라 효율성 검증 및 지능화 기반 수요자 맞춤형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적응연구 등 • (사업기간) 2006년 이후 지속 과제로 5년마다 대학원 선정. '06년 이후 26개 대학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638명(석사 449명, 박사 189명) 양성	• (지원내용) 국제기구 파견 • (교육내용) 국내전문교육 과정과 국제기구 인턴십 근무 과정으로 구성, 국내서 4주 교육 후 환경부 소관의 국제기구에 인턴 파견. 기후변화, 환경, 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 기구 근무에 필요한 기본소양, 환경 매체별 정책 및 기술 등 • (사업기간) '09년 이후 매년 용역입찰, 매년 예산변동	• (지원내용) 에너지 특화 대학원/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해외 연구원 파견 지원 • (교육내용) 에너지 신산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학교별로 특화됨, 수소산업 융복합, 에너지 안전, 스마트 원전 해체, 스마트 자원 개발 에너지거래 플랫폼, 지능형/AI기반 산업/건물 에너지 관리/제어, 재생에너지/ 분산전원 계통 유연성, 태양광과 인공지능, 글로벌에너지정책 등 • (사업기간) 매년 상 선정, 선정 이후 5년 내외
수행 기관	세종대, 아주대(2019), 부산대(2021), 서울시립대 • 을지대 컨소시엄(2023)	연세대(~2022), 성균관대(2023~2025), 고려대(2026~)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건국대, 강원대(2025) 등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국제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탄소흡수원관리 특성화 대학원
사업 내용	• (목적) 기상기후분야 국제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상기후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 • (지원유형) 비학위과정 • (교육대상) 학부생 이상 (대기과학 관련 전공 우대, 연평균 20~30명) • (지원내용) 3주 교육과정, 국제기구(WMO, UNESCAP, ADPC)등 파견 • (교육내용) 기상기후 업무 이해, 국제협력 동향, 국제기구 근무자 소양 및 정책 교육 • (사업기간) 2014년부터 매년 교육생 모집, 누적 약 350명 수료	• (목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전략 전담 실무형 인재 육성 • (지원유형) 비학위과정 • (교육대상) 학부생 및 졸업생 (연간 100여명) • (지원내용) 이론교육 및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 (교육내용) 기후변화 및 국제협상, 글로벌 기후규제 및 탄소중립 트렌드 분석, 배출량(scope 1, 2, 3) 산정 방법론, 보고 및 검증 실무, 배출권거래제 이행, 기업 탄소감축 전략 수립 등 • (사업기간) '09년부터 누적 약 3,000명 수료, 취업률 72.5% 기록	• (목적) 산림 부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탄소흡수원 교육 및 연구 기반 확대 • (지원유형) 석·박사학위 협동과정 • (교육대상) 석/박사 과정 • (지원내용) 전문 과정(대학원) 운영 인건비, 연구활동비, 운영경비 • (교육내용) 기초역량교육으로 경제· 경영·보건·사회·생태학· 토양학·생리학·유전학· 보호학·양생동물학 수강. 실무강화프로그램으로 산림탄소 흡수원 관리, 산림 탄소 분야의 국제 전문가 과정, 전문역량 과정으로 현장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16~'20(1기, 서울대), '21~'25(2기, 고려대), '23~'27(3기, 국민대), '26~'30(4기, 강원대)
수행 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강원대
소관	기상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본 조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기후테크 기술의 사업화·실증·통상 등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김주영의원안은 행정·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기후테크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학칙에 따른 자율적 정원 조정 원칙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대학 정원 제한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옴부즈만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두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김주영의원안 제24조·박정의원안 제22조), 기후테크 옴부즈만 근거를 신설함(김주영의원안 제25조).

[제정안 제24조(제22조) 및 제25조]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4장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24조(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후테크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25조제7항에 따라 기후테크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2. 기후테크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후테크 임시허가·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제4장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22조(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2. 기후테크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후테크 임시허가·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심의 대상이 되는 기후테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기후테크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심의 대상이 되는 기후테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제24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기후테크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을 정하거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후테크 옴부즈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테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기후테크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1. 기후테크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 2. 기후테크와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을 정하거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정책자금 운영 기관에 대한 기후테크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4. 그 밖에 기후테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 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요 심의·조정 사항 등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위원회 구성 정원(20명, 30명) 및 옴부즈만 신설 유무에서 차이가 있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후테크 분야의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두 제정안의 차이인 정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조항에 따른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인원 규모	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20명(30명) 이내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위원 자격 및 위촉 방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중 위촉 1. 정부/지자체 위원: 심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민간 위원: 규제특례·임시허가 및 기후테크 육성·활성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하부 기구	업무 검토·처리 및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정원을 20명, 박정의원안은 3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원 수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동 조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산업융합 촉진법」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유사입법례]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김주영의원안은 별도로 ‘기후테크 옴부즈만 제도’ 신설 규정을 두고 있음.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이나 규제 관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행정의 편향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써, 기후테크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융합 촉진법」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옴부즈만 유사입법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산업융합촉진 ombudsman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발굴 및 개선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및 일괄처리

제정안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의 신속확인(김주영의원안 제26조, 박정의원안 제23조), 실증특례 신청·심의·관리·취소·연장(김주영의원안 제27조~제30조, 박정의원안 제24조~제27조), 임시허가 신청·심의·취소(김주영의원안 제31·32조, 박정의원안 제28·29조), 일괄처리(김주영의원안 제33조, 박정의원안 제30조)를 규정함.

[제정안 제26조(제23조)~제33조(제30조)]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2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실증 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제23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실증 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u>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등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u>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그 내용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기후테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⑦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5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기후테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 및 제품·서비스(이하 “기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 등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자는 사업 수행 전에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 및 제품·서비스(이하 “기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 등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자는 사업 수행 전에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기후테크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 등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 등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⑨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2. 해당 기후테크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 등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7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 등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⑨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기술 등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기술등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증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증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실증특례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기술 등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

제27조(실증특례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기술 등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

건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등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임시허가)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기후테크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프로젝트 수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

건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시허가)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기후테크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프로젝트 수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

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2. 해당 기술 등의 파급력 및 이용자의 편익
3. 기술 등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2. 해당 기술등의 파급력 및 이용자의 편익
3. 기술등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 등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후테크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일괄처리) ① 기후테크기업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에 2개 이상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 등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후테크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일괄처리) ① 기후테크기업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에 2개 이상

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 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 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 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 심사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 심사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규제 의 신속 확인

제정안은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상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함.

해당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 필요 여부를 회신받도록 하고, 어느 행정기관의 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함.

두 제정안 모두 30일 이내 초기 회신 등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김주영의원안의 경우 회신 총 기간을 90일로 설정하고, 미회신시 간주 처리 규정이 없고,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함께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박정의원안은 회신 총 기간을 60일로 설정하고, 미회신시 간주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함께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음.

[김주영의원안 및 박정의원안 비교]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회신 총 기간	90일	60일
미회신시 간주 처리 규정	X	O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절차를 함께 회신 규정	O	X

기후테크는 에너지·환경·건축·교통 등 복수 부처 법령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처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과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후테크 사업자가 신속히 규제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두 제정안 사이의 차이점인 총 회신 기간(60일/90일) 및 간주 처리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조건·절차를 함께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절차 간소화의 효과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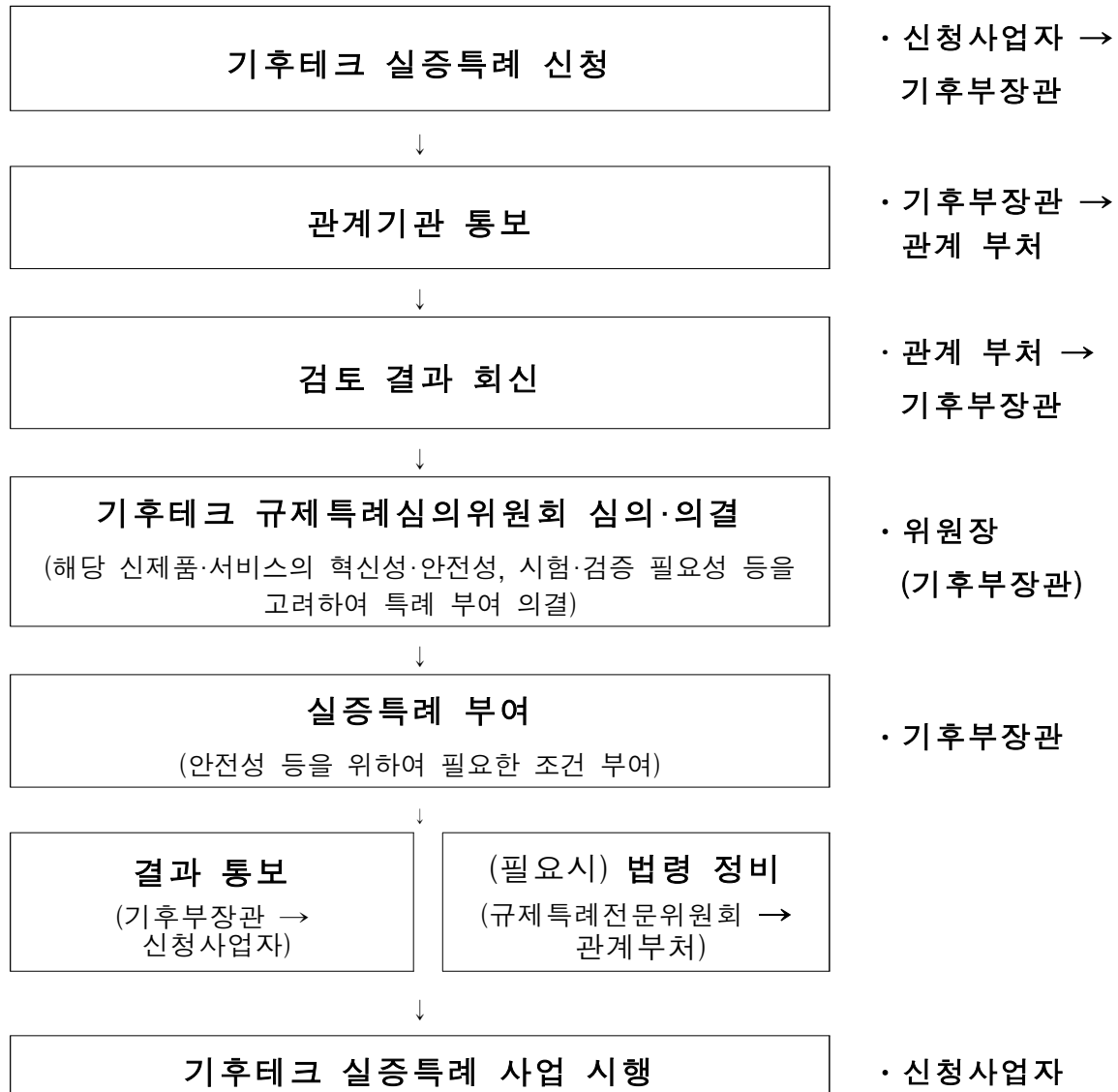
(2) 실증을 위한 특례

제정안은 기후테크기업이 ① 허가등 근거 법령에 해당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② 기존 기준을 해당 기술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한된 구역·기간·규모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받고, 이를 포함하여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위원회는 ① 사업실시계획서, ② 기후테크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③ 시장 영향, ④ 손해배상 방안 적절성, ⑤ 국민 생명·안전·환경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함.

실증특례 신청자는 사업 수행 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위원회가 정하며, 신청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기후테크 실증특례 신청 절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증특례 조항은 기후테크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전개되는 반면 관련 법령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제한된 범위에서 검증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의 성장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두 제정안은 실증특례 신청 요건,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효기간 등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관계기관 검토결과 회신 단축 기간(15일/7일), 관리·감독 조항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의 유무 등 일부 차이점이 존재함.

[김주영의원안 및 박정의원안 비교]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관계기관 검토 기간 (자료 보완 등을 고려한 총 검토기간)	30일 (90일, 한 차례 연장)	15일 (30일,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관계기관 검토결과 회신 단축 기간	15일	7일
법률 정비 필요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의무	O	X

관계기관 회신 단축 기간은 7일(박정의원안)이 행정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나, 기후테크 분야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김주영의원안)’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의무(김주영의원안)는 실증 결과가 긍정적임에도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성 확보 장치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임시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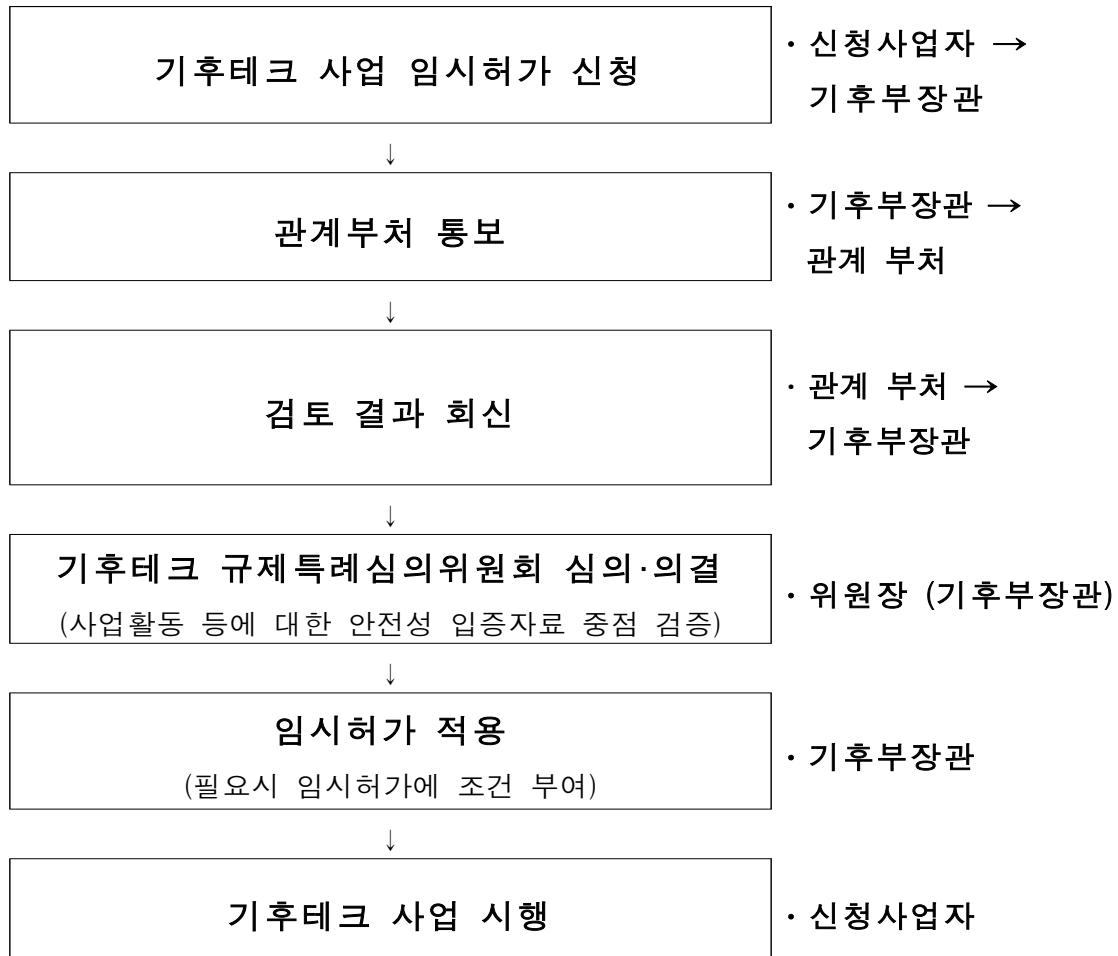
제정안은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① 허가등 근거 법령에 해당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② 기존 기준을 해당 기술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 통보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허가를 부여하며, 위원회는 ①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② 기술의 파급력과 이용자 편익, ③ 손해배상 방안 적절성, ④ 국민 생명·안전·환경 저해 여부를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정함.

실증특례가 제한된 범위에서의 기술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임시허가는 실제 사업 수행을 임시로 허용하는 단계로, 새로운 기후테크의 시장 출시를 허용함으로써 혁신적 서비스·제품의 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환경성·이용자 편익·손해배상 방안 등을 심의 후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소비자·환경 보호와 혁신 허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임.

참고로, 임시허가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기후테크 사업 임시허가 절차도]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두 제정안은 신청 요건,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효기간 등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관계기관 검토 결과 회신 기간에서 김주영의원안은 30일 이내, 박정의원안은 15일 이내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임시허가는 소관 행정기관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를 부여하는 구조이므로, 관계행정기관이 적정한 기간동안 검토가 필요한 점 및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일괄처리

제정안은 기후테크기업이 하나의 사업 추진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관 허가등은 즉시 심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허가등은 해당기관에 신속 진행을 요청하도록 함.

ESS 직결 연계형 충전소 사례¹⁶⁾처럼 전기차·전력망·충전인프라 등 복수 부처 소관 규제가 교차하는 경우 각 부처에 모두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해 보임.

16) 'PPA용 ESS 직결 연계형 DC-DC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DC그리드 포밍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ESS 직결 연계형 DC-DC 초급속 전기차충전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음.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집적단지 조성

제정안은 공기업·정부출연기관 등 보유 시설을 기후테크기업에 개방·활용하고 실적 평가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김주영의원안 제34조·박정의원안 제31조),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근거를 마련함(박정의원안 제32조).

[제정안 제34조~제34조]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제34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기업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기후테크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제31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기업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기후테크기업에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산업과 혁신생태계 육성, 기후테크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서비스 홍보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시설 2.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서비스 인증 및 실증화 시설 3.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집적단지
--	---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투자 유치, 공공수요 연계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 및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테크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테크기업, 혁신기업,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 연구기관, 제14조에 따른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을 포함한 투자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후테크기업의 실증시험·신뢰성 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공기업,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기후테크기업에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초기 기후테크 기업이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생산시설을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증·생산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의 시설을 기후테크기업에 개방함으로써 기업의 시설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사업화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임.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음.

[실증기반 개방·활용 유사입법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박정의원안 제3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테크 산업 및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① R&D·인력양성·창업·사업화 지원 시설, ② 기술 검증·인증 및 실증화 시설, ③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 집적단지, ④ 투자유치·공공수요 연계·시장진출 지원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법정 구역(벤처기업 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단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기후테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검증·인프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투자기관, 수요처가 지리적으로 집적된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후테크 기업 간 협업과 공급망 연계를 촉진하는 취지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물리적 집적과 생태계 형성을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입법례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17)),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18)) 등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1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다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 조항은 타법상 조성된 특화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유사 입법례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서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는 간주 조항과 비교할 경우 기존 특구·단지법상의 세제·입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하도록 하는 간주·의제 효력이 부족할 수 있음.

[실증화 시설 및 집적 단지 유사입법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1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기준에 조성된 단지·시설 지구의 법적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활용 규정에 더해 인·허가 및 특례 의제 조항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물산업진흥법」에 비하여 동 제정안은 집적단지 등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공공 실증화 시설이나 연구·진흥 시설 운영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위탁 관리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셋째, 제정안은 구체적인 입지 선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의 위임 근거가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위임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카. 보칙 및 부칙

제정안은 자료 제출·검사(김주영의원안 제35조, 박정의의원안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김주영의원안 제36조, 박정의의원안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김주영의원안 제37조, 박정의의원안 제35조) 규정을 보칙으로 두고, 시행일(공포 후 1년),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전문 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함.

[제정안 보칙 및 부칙]

김주영의원안	박정의의원안
제5장 보칙 제3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 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5장 보칙 제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 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지원센터 등 기후테크산
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3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과 제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지원센터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3.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읍부즈만으로 위촉
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기
구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에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24조·제
25조에 따른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
획 수립, 기후테크 관련 통계의 조사
· 작성, 기후테크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후테크의 지원센터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지원센터 등 기후테크산
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3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과 제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3. 제2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에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에 따
른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
후테크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기
후테크가치평가와 평가기관, 기후테
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

지정 및 운영, 기후가치평가와 평가기관,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기후테크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벤처투자조합 중 기후테크 관련 투자를 주로 하는 조합은 제15조에 따른 기후테크 전문투자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벤처투자조합 중 기후테크 관련 투자를 주로 하는 조합은 제14조에 따른 기후테크 전문투자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두 제정안은 자료 제출·검사권 및 권한 위임·위탁 체계 등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및 부칙상 시행 전 준비행위 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

동 보칙 및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기후테크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 임직원(제37조제4호)을 의제 대상에 추가로 명시함.

옴부즈만 사무기구는 기업의 규제 애로를 조사·발굴하고 공공기관에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공성 및 권한의 영향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임.

옴부즈만 규정이 있는 유사입법례 또한 옴부즈만 사무기구 임직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옴부즈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유사입법례]

「산업융합 촉진법」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2. (생략)

둘째, 두 제정안은 보칙에서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벌 또는 행정벌(과태료) 조항을 보완하여 보고·검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참고 1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23.6.22.)

비전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성공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화 도모

목표 (~'30년)



3대 전략 · 9대 과제

① [투자] 기후테크 산업 투자 · R&D 확대

- ① 기후테크 산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 및 확대
- ②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
- ③ 스케일업을 위한 기후금융 지원 강화

② [시장] 사업화 및 국내 · 외 시장개척 지원

- ① 혁신조달을 활용한 초기수요 견인
- ② 규제혁신을 통한 조속한 사업화 지원
- ③ 기후테크 산업의 수출동력화 촉진

③ [산업기반] 기후테크 산업 성장기반 강화

- ①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 ②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분류체계 개편
- ③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확대

참고 2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현황

연번	S/B	부처	법률	기관	분야
1	산업융합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2	ICT융합 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융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3	혁신금융 샌드박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4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5	스마트시티 샌드박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	스마트시티
6	연구개발특구 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진흥재 단	-
7	순환경제 샌드박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8	모빌리티 샌드박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법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참고 3

기후테크 기업 사례

클린테크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운영 소프트웨어, 분산 전원 통합관리. 기상 빅데이터 기반 예측 기술 보유.
클린테크	해줌	태양광·풍력·ESS 대상 전력중개사업, 발전량 예측·입찰·제어·정산, RE100·PPA 솔루션 제공.
클린테크	그리드위즈	전력수요관리(DR), AI 기반 VPP, 전기차 충전 솔루션 등 에너지 관리 사업 수행.
클린테크	케빈랩	가정·건물 에너지관리 플랫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클린테크	하이리튬산업	액화수소 저장탱크, 수소 액화기, 액화수소 드론 등 수소 밸류체인 기술 보유.
카본테크	카본코	DL이앤씨 자회사로 CCUS, 이산화탄소 흡수제, 탄소포집 설비·솔루션 개발.
카본테크	에어레인	기체분리막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바이오가스 고질화, 수소 생산 관련 분리막 솔루션.
카본테크	엔츠(AENTS)	탄소회계 플랫폼을 통해 Scope 1·2·3 배출량 산정,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CBAM·기후공시 대응 지원.
카본테크	카본사우루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 솔루션을 통해 공급망 Scope 3 배출량 관리 지원.
카본테크	소프트베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 앱, 충전소 관제 솔루션, 충전 데이터 기반 컨설팅 및 배터리 진단 서비스.
에코테크	수퍼빈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 로봇, 펌프·알루미늄 캔 선별·회수, 재활용 소재 가공 사업.
에코테크	리코(Reco)	사업장 폐기물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폐기물 데이터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
에코테크	성일하이텍	폐배터리·이차전지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여 배터리 소재로 재활용.
에코테크	재영텍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고순도 탄산리튬 추출, 배터리 순환경제형 소재 회수 기술.
에코테크	피엠그로우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기반 잔존수명 진단, 재사용 전지 검사,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푸드테크	엔씽	IoT 기반 모듈형 수직농장, 물류센터형 스마트팜, 도심형 연중 식량 생산 인프라.
푸드테크	누비랩	AI 비전 기반 푸드스캐너로 음식 종류·섭취량·잔반량을 분석하여 급식 효율화 및 음식물 쓰레기 저감.
푸드테크	인테이크	대체식품·대체단백질 기업. 미생물 기반 대체단백질, 대체육·대체란 등 대체식품 개발.
푸드테크	지구인컴퍼니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개발·판매.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육 제품화.
지오테크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초소형 위성 기반 지구관측, 메탄가스·온실가스 모니터링 위성 개발.
지오테크	텔레픽스	위성영상·SAR 데이터 기반 원자재 물동량 분석, 위성 기반 지구관측 데이터 활용.
지오테크	윈클(WinCL)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솔루션, 글로벌 탄소 레지스트리 기반 탄소크레딧 확보·거래 지원.
지오테크	그리너리	LCA·탄소회계 통합플랫폼,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크레딧 인증·발행 시스템.